

항목: **학생** 발행: 번호: **A-832**
제목: 학생 대 학생의 괴롭힘, 협박 및/또는 집단 따돌림 페이지: 1 중 1

변경 사항 개요

본 규정은 2011년 10월 12일자 규정 A-832을 대체합니다. 본 규정서는 학생 대 학생의 차별에 따른 괴롭힘, 협박 및/또는 집단 따돌림에 대한 이의제기 접수, 조사 및 해결에 관한 절차를 수립합니다.

변경 사항

- 차별과 모든 집단 따돌림, 괴롭힘과 협박 금지의 확대 (p.1, § I)
- 학생의 실질적 또는 인지적 보호 대상 현황에 기반해 어떤 행동을 취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p.1, § I)
- 금지된 괴롭힘, 집단 따돌림과 협박의 정의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p.1, § I.C)
- 금지 행위에 사용될 수 있는 정보 기술의 종류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p.2, §§ I.D, E)
- 직책을 사임하거나 일시적으로 자신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모든 Respect for All (RFA) 연락담당관관의 교체 요건을 규정하였습니다 (p.2, § II.A)
- 학생 대 학생 차별, 괴롭힘, 협박, 및/또는 집단 따돌림을 목격하였거나 관련 보고를 받은 교직원은 학교 수업일 기준 1일 이내에 혐의를 구두로 보고하고 구두 보고가 이루어진 후 2일 이내에 보고를 할 것을 요구하는 조항을 첨가하였습니다. (p.3, § II.D)
- 차별, 괴롭힘, 협박, 및/또는 집단 따돌림의 조사 보고 결과를 어떻게 관련 고발 내용에 관계 있는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방법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p.4, § III.E)
- 직원에게 반드시 제공되어야 하는 연수의 종류를 확대하고 교사 외의 직원을 포함한 교직원의 범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p.6, §§ V.D,E)
- 본 규정서의 수정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첨부 내용이 변경되었습니다.

개요

저희 뉴욕시 교육청에서는 학생간의 괴롭힘이나 협박, 집단 따돌림을 행하지 않고, 인종, 피부색, 신념, 민족, 출신 국가, 시민권 유무/체류 신분, 종교, 성별, 성 정체성, 성 표현, 성적 취향, 장애 또는 체중 등을 이유로 학생이 다른 학생을 차별하지 않는, 자유롭고 안전하고 편안한 학습 및 교육 환경을 유지하는 정책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차별이나 괴롭힘, 협박 및/또는 집단 따돌림은 수용될 수 없는 행동이며 이런 행동이 교육 과정을 방해하거나 확실히 방해할 위험이 있거나, 학교 공동체의 보건, 건강, 도덕 또는 안녕에 해를 끼치거나 확실히 해를 끼칠 위험이 있다면 학교, 학교 수업시간, 학교 방과 전 및 후, 학교 건물 내, 학교 후원 행사 또는 교육청이 지원하는 차량을 이용해 이동 중은 물론 학교 건물이 아닌 타 장소에서도 절대로 용인될 수 없습니다. 본 규정서의 준수 사항을 지키지 못한 것으로 들어난 학생들은 규율규정 및 교육감 규정 A-443에 부합하는 적절한 징계 처분을 받게 될 것입니다. 또래 간의 성희롱에 관한 불평 접수는 교육감 규정 A-831를 참고하십시오.

I. 정책

- A. 저희 뉴욕시 교육청에서는 학생간의 괴롭힘이나 협박, 집단 따돌림을 행하지 않고, 인종, 피부색, 신념, 민족, 출신 국가, 시민권 유무/체류 신분, 종교, 성별, 성 정체성, 성 표현, 성적 취향, 장애 또는 체중 등을 이유로 학생간의 차별이 없는, 자유롭고 안전하고 편안한 학습 및 교육 환경을 유지하는 정책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보호 대상에 관한 정의는 첨부 1에 나와 있습니다] 차별이나 괴롭힘, 협박 및/또는 집단 따돌림은 금지 행위이며 이런 행동이 교육 과정을 방해하거나 확실히 방해할 위험이 있거나, 학교 공동체의 커뮤니티의 보건, 건강, 도덕 또는 안녕에 해를 끼치거나 확실히 해를 끼칠 위험이 있다면 학교, 학교 수업시간, 학교 방과 전 및 후, 학교 건물 내, 학교 후원 행사 또는 교육청이 지원하는 차량을 이용해 이동 중은 물론 학교 건물이 아닌 타 장소에서도 절대로 용인될 수 없습니다.
- B. 학생 대 학생 차별, 괴롭힘, 협박 및/또는 집단 따돌림이 의심되는 상황을 보고하거나 이런 행동과 관련된 조사를 돕는 학생, 교사 또는 교직원에게 어떤 보복 행위도 금지하는 것이 뉴욕시 교육청의 정책입니다.
- C. 학생이 다른 학생에 대해 다음과 같은 행동이나 말 또는 글(사이버불리언 포함)로서 적대적 학교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본 규정 위반행위입니다:
1. 프로그램이나 학교에서 후원하는 활동, 또는 기타 전반적인 교육활동에 참여할 학생의 능력 또는 학생의 학업수행도에 불합리하고도 적잖은 방해물 가져오는 효과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가능성; 또는
 2. 학생의 정신적, 정서적, 신체적 안녕에 불합리하고도 적잖은 방해물 가져오는 효과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가능성; 또는
 3. 학생이 스스로의 신체적 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충분히 초래하였거나 충분히 초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상황; 또는
 4. 학생에게 신체적 상해를 입히거나 정서적 해를 입혔거나 충분히 입힐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상황.

금지 행위에는 실질적 또는 인지되는 인종, 피부색, 신념, 민족, 출신국가, 시민권/이민자 신분, 종교, 성별, 성정체성, 성표현, 성취향, 장애, 체중 등을 이유로 차별, 괴롭힘, 협박, 따돌림 등을 하는 것이 포함되나 반드시 이러한 행위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 D. 차별, 괴롭힘, 협박, 따돌림 등은 다양한 형태로 표출될 수 있으며, 신체적, 언어적(말과 글 모두) 행위가 모두 포함됩니다. 글로 차별, 괴롭힘, 협박 및/또는 집단 따돌리기에는 정보 테크놀로지를 이용한 전자 커뮤니케이션 (사이버 불리잉)을 비롯하여 다음과 같은 것이 포함되나 반드시 이에만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인터넷, 휴대전화, 이메일, 개별 디지털 지원기기, 소셜 미디어, 블로그, 채팅룸, 게임 시스템 등.
- E. 이런 행위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며 이에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 육체적 폭력
 - 스토킹;
 - 협박, 욕설, 놀림;
 - 폭력적이거나 과격한 제스처;
 - 굴욕을 느끼거나 소외를 목적으로 또래 그룹에서 제외시키는 행동;
 - 멸시적 언어;
 - 무시하는 농담을 하거나 놀리거나 욕하기;
 - 자신의 의견이나 편견을 낙서, 사진, 그림, 동영상 등의 글로 쓰거나 그림으로 만들어 인터넷에 올리거나 인쇄하는 행위.

II. 신고 절차

- A. 각 학교장은 반드시 학생 대 학생 차별, 괴롭힘, 협박 및/또는 집단 따돌림에 대해 학생 또는 교직원이 보고할 수 있으며 이런 문제에 관련해 학생과 직원에게 자료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최소 1명의 교직원(RFA 연락 담당이라 칭함)을 지명해야 합니다.
1. 각 학교에는 항상 최소 1명의 RFA 연락담당관을 두고 섹션 V.D 및 E에 나온 내용에 관한 직무연수를 받게 해야 합니다.(이후 공인 RFA 연락담당관이라 칭함). 공인 RFA 연락담당관 자리가 공석이 될 경우, 학교장은 반드시 30일 이내에 신임 공인 RFA 연락담당관을 임명해야 합니다. 그 기간동안, 학교장은 즉시 임시 RFA 연락담당관을 임명해야 합니다.
 2. 공인 RFA 연락담당관이 일시적으로 학교에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되었고 그 학교에 또 다른 공인 RFA 연락담당관이 없을 경우, 학교장은 반드시 본래의 RFA 연락담당관이 복직할 때까지 임시 담당관을 임명해야 합니다.
- B. 다른 학생에 의해 차별, 괴롭힘, 협박, 따돌림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는 학생은 이 사건을 FRA 연락 담당이나 기타 교직원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사건을 목격했거나 이에 관해 알고 있는 학생 역시 RFA 담당관이나 기타 교직원에게 보고할 수 있습니다. 학생의 신고는 서면 또는 구두로 접수될 수 있습니다 (첨부 2를 참고하십시오).
- C. 학교 교직원에게 신고하기를 꺼리는 학생이 있다면, 학교 및 청소년 개발 담당실 (OSYD) 이메일 RespectforAll@schools.nyc.gov로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적절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상황이 있습니다: 보고하고자 하는 행위가 본 규정서에서 적용되는 것인지 확실하지 않은 경우; 이전에 관련 내용을 보고한 적이 있으나 이런 행위가 계속되는 경우; 또는 보고 자체가 꺼려지는 학생의 경우. 이런 경우에는 OSYD에서 적절한 후속 조치를 결정할 것입니다. 괴롭힘, 협박 및/또는 따돌림에 대한 신고는 익명으로 접수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바탕으로 조사에 착수할 수 있습니다.
- D. 학생 대 학생간의 차별, 괴롭힘, 협박, 따돌림을 직접 목격하였거나 이에 관해 알고 있거나, 학생이 이러한 행위의 피해자라는 정보를 입수한 교직원은 1 학교업무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RFA 담당관이나 학교장/대리인에게 이 사실을 구두로 일단 보고하고 구두보고를 한지 2일 이내에 문서로 신고서를 접수해야 합니다. (첨부 2 참고) 학교에서는

모든 문서상의 보고서를 보관해야 합니다.

- E. 학부모도 학생 대 학생간의 차별, 괴롭힘, 협박, 따돌림 행위를 구두나 문서로 학교장/대리인이나 RFA 담당관에게 신고하거나 이메일 RespectforAll@schools.nyc.gov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신고는 본 규정에 명시된 절차에 의거하여 처리되어야 합니다.
- F. 학교장/지명 담당자가 차별로 인한 괴롭힘, 협박 또는 집단 따돌림이 의심되는 행동이 범죄 행위에 해당된다고 믿는다면, 반드시 경찰에 연락하여야 합니다. 이 때 학교장/지명 담당자는 법률 서비스 담당실 및/또는 CFN 네트워크 리더와 관련 내용을 논의할 수 있습니다.
- G. 신고 내용의 성격과 문제에 따라 관련 내용에 관한 조사가 학교 차원에서 이루어 질 수 없다면, 학교장/지명 담당자는 OSYD와 상담 하도록 합니다.

III. 조사

- A. 차별, 괴롭힘, 협박, 따돌림에 관한 신고는 신고를 받은지 24시간 이내에 교육청 온라인 발생 보고 시스템(OORS)에 입력되어야 합니다.
- B. 학교장/지명인은 반드시 실질적으로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다음과 같이 단계적인 조사를 해야 하며 어떤 경우라도 신고를 접수한 후 5일 이내에는 조사를 시작하여야 합니다:
 - 1. 잠재적 피해자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대화 내용을 기록;
 - 2. 잠재적 피해자에게 자세한 피해 내용의 설명을 포함한 가능한 상세한 내용, 사건 발생 시간 및 목격자 목록을 서면으로 작성하도록 요청;
 - 3. 고발당한 학생을 인터뷰하고 신고된 바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 입증되었다면 반드시 즉각적으로 중단할 것을 조언;
 - 4. 고발당한 학생에게 사건관련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도록 요청;
 - 5. 목격자가 있다면 인터뷰하고 이들의 진술을 서면으로 접수.
- C. 학교장/지명 담당자는 반드시 고발당한 학생의 학부모에게 관련 내용을 조언하여야 합니다. 학교장/지명 담당자는 또한 반드시 피해 학생이 통보에 따른 안전 문제를 학교장/지명 담당자에게 알리지 않은 이상 신고를 한 피해 학생의 학부모에게도 관련 내용을 조언하여야 합니다. 이런 경우 학교장/지명 담당자는 비밀보장 및 안전 문제에 관련하여 피해 학생의 학부모에게 사건을 알릴 것인지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학교장은 이런 결정을 내릴 때 법률서비스 담당실(Office of Legal Services)과 상담할 수 있습니다.
- D. 신고된 행위가 본 규정서에서 정한 부당한 행위에 부합하는지 결정함에 있어, 전반적인 정황을 평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때 다음과 같은 사실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 사건 당사자 학생들의 나이;
 - 행위의 성격, 심각성 및 범위;
 - 행위의 빈도 및 지속 기간;
 - 행위에 가담한 학생들의 수;
 - 행위가 이루어진 상황;
 - 행위가 발생한 장소;
 - 동일한 학생들이 포함된 기타 사건이 해당 학교에서 발생한 적이 있었는지 여부;
 - 그런 행위가 학생의 교육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는지 여부.

- E. 학교는 피해자 및 가해자로 추정되는 양측 학생들의 부모들에게는 학생 기록 프라이버시에 관한 주 및 연방법에 의거해 해당 사건 조사 결과를 통보해야 하나, 섹션 III.C.에 의거하여 피해자로 추정되는 학생의 부모에게 통보하지 않기로 결정된 경우는 예외입니다.

IV. 후속 조치

- A. 해당되는 경우, 신고 학생 및 가해 학생을 가이던스 카운슬러, 학교 소셜 워커, 심리사 또는 기타 적절한 학교 직원에게 별도의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 B. 적절하다면, 학교장/지명 담당자는 감수성 훈련, 상담 및/또는 상담을 위해 커뮤니티 기관으로의 추천, 지원 및 교육을 포함한 중재 방법을 활용하도록 합니다.
- C. 본 규정서의 내용을 준수하지 못한 것으로 결정된 학생들은 교육청의 규율규정 및 교육감 규정 A-443에 의거해 처벌받게 될 것입니다.
- D. 학교장/지명 담당자는 반드시 신고된 행위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V. 공고

- A. 각 학교는 반드시 "모든 사람 존중"에 관한 포스터를 학생, 학부모 및 교직원들의 눈에 띄는 장소에 게시해야 합니다.¹ 해당 포스터에는 반드시 RFA 연락 담당의 성명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첨부 번호 3 참조).
- B. 각 학교에서는 반드시 "Respect for All" 소책자를 매년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배포해야 합니다 (첨부 4 참고). 학년도 중간에 학교에 등록하는 학부모/학생에게도 반드시 등록 시점에 본 소책자를 제공해야 합니다.
- C. 각 학교장/대리인은 반드시 매년 10월 31일 이전 본 규정서에서 명시하는 정책 및 절차에 대한 정보와 연수를 학생들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 D. 각 학교장은 반드시 모든 교직원(교사 외의 직원들도 포함)들에게 매년 10월 31일 이전에 본 규정에 명시된 정책 및 절차에 관한 정보와 연수 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러한 연수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다뤄져야 합니다:
1. 학생의 실질적 또는 인지되는 인종, 피부색, 신념, 민족, 출신국가, 시민권/이민자 신분, 종교, 성별, 성별관심, 성표현, 성취향, 장애, 체중 등을 이유로 자행되는 차별, 괴롭힘, 따돌림으로 분류될 수 있는 다양한 행위에 관한 인식과 민감성 고취.
 2. 괴롭힘, 따돌림, 차별 행위의 식별과 경감법.
 3. 괴롭힘, 따돌림, 차별 행위의 사회적 패턴.
 4. 차별, 괴롭힘, 따돌림 행위의 예방 및 대응.
 5. 괴롭힘, 따돌림, 차별 행위의 결과에 대한 이해 및 교육환경 속에서의 따돌림, 편견, 공격적 행위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는 전략.
 6. 위의 개념들을 학급 활동에 포함시키는 등의 안전하고 지원적인 학교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노력.
- E. 각 학교장은 위에 설명한 학교 차원의 연수 외에도, 학교별로 최소 1명의 RFA 연락담당관이 OSYD에서 실시하는 RFA 의무 연수에 참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숙지하도록 합니다: 1) 인종, 피부색, 신념, 민족, 출신국가, 시민권/이민자 신분, 종교, 성별, 성적체성, 성별 표현, 성취향, 장애 및 체중 등의 문제에 있어 인간관계 및 2) 위의 섹션 V.D 1-6에서 설명한 문제들).
- F. 본 규정서의 사본은 학부모, 교직원 및 학생의 요청이 있을 때 배부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¹ 본 규정에서 사용되는 "학부모"란 용어는, 학생의 부모(들), 보호자(들), 학생과 부모 관계나 법적 보호 관계에 있는 사람(들), 또는 학생이 18세 이상이거나 독립한 미성년자일 경우 학생 본인을 의미한다.

합니다.

VI. 통합 학교 및 청소년 개발 계획

각 학교는 반드시 10 월 31 일 까지 연례 통합 학교 및 청소년 개발 계획에 다음과 같은 정보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 RFA 연락 담당의 성명.
2. 최소 1 명의 RFA 연락담당관이 상기 섹션 V.E 에 명시한 연수를 받았거나 앞으로 받을 것이라는 증명.
3. 본 규정서에 명시된 정책 및 절차에 대한 정보와 연수를 학생들에게 제공했다는 증명.
4. 교사 외의 직원들을 포함한 전 교직원이 상기 섹션 V.D 에 설명한 정보와 연수를 받았다는 증명.
5. 괴롭힘, 협박 및/또는 집단 따돌림의 예방 및 대응방안.

VII. 비밀보장

본 규정에 따라 신고된 내용과 관련된 모든 당사자 및 목격자들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하는 것이 교육청의 정책입니다. 그러나 비밀보장의 필요성은 반드시 경찰 조사에 협조할 의무, 가해자에게 이의제기 기회 제공 및/또는 조사와 신고 내용을 해결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과 형평성이 맞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신고 내용에 관련된 정보는 적절한 상황에서는 공개될 수 있습니다.

VIII. 보복

학생간의 차별, 괴롭힘, 협박 및/또는 집단 따돌림이 의심되는 상황을 보고하는 학생이나 이런 행동과 관련된 조사에 협조하는 학생, 교사 또는 교직원에게 대해 학생은 어떤 보복 조치도 취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보복 행위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 질 것이며 적절한 징계를 받게 될 것입니다.

IX. 문의

본 규정에 대한 문의는 아래 연락처로 하십시오:

<u>전화</u> :	Office of School and Youth Development N.Y.C. Department of Education 52 Chambers Street, Room 218 New York, NY 10007	<u>팩스</u> :
212-374-6834		212 374-5751

금지된 차별 및 편견에 의한 괴롭힘, 협박 또는 따돌림 행위에 관한 요약

저희 뉴욕시 교육청에서는 실질적, 또는 인지되는 인종, 피부색, 신념, 민족, 출신 국가, 시민권 유무/체류 신분, 종교, 성별, 성 정체성, 성 표현, 성적 취향, 장애 또는 체중 등을 이유로 학생이 다른 학생을 차별하거나 괴롭힘, 협박, 집단 따돌림이 없는 자유롭고 안전하고 편안한 학습 및 교육 환경을 유지하는 정책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런 괴롭힘이나 협박 및/또는 집단 따돌림은 수용될 수 없는 행동이며 이런 행동이 교육 과정을 방해하거나 확실히 방해할 위험이 있거나, 학교 공동체의 보건, 건강, 도덕 또는 안녕에 해를 끼치거나 확실히 해를 끼칠 위험이 있다면 학교, 학교 수업시간, 학교 방과 전후, 학교 건물 내, 학교 후원 행사 또는 교육청이 지원하는 차량을 이용해 이동 중은 물론 학교 건물이 아닌 타 장소에서도 절대로 용인될 수 없습니다. 본 규정서의 준수 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난 학생들은 규율규정 및 교육감 규정 A-443에 부합하는 적절한 징계 처분을 받게 될 것입니다. 또래 간의 성희롱에 관한 불만은 교육감 규정 A-831를 참고해 주십시오.

다음은 직원 및 학생들이 차별로 인한 행동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작성된 내용입니다.

시민권/체류 신분: 실질적 또는 직관적으로 느껴지는 체류 신분 또는 미국 외의 나라의 시민 신분.

장애: 실질적 또는 직관적으로 느껴지는 장애 또는 장애 내력. "장애"라는 용어는 (1) 한 가지 또는 그 이상의 주요 일상 활동에 상당한 제한을 받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손상을 갖고 있는 사람; (2) 이런 손상을 받은 기록이 있는 사람; 또는 (3) 이런 손상을 갖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주요 일상 활동에는 스스로를 돌보기, 걷기, 보기, 듣기, 말하기, 숨쉬기, 일하기, 육체 노동 수행 및 학습 등이 포함됩니다. 약품 또는 지원/보조 기기 등의 도움으로도 주요 일상 활동에 상당한 제한을 받는 손상에는: AIDS, 알콜중독, 실명 또는 시각 손상, 양, 귀먹음 또는 청각 손상, 당뇨병, 약물 중독, 심장 질환 및 정신 장애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민족/출신국가: 실질적 또는 직관적으로 느껴지는 출신 국가 또는 민족 고유성. 출신 국가는 여러 가지 인종과 종교가 각기 다른 사람들이라도 동일 국가 출신일 수 있기 때문에 인종/피부색 또는 종교/신념과 구별됩니다. "출신 국가"라는 개념은 모든 국가 단체의 일원 및 동일한 조상, 문화 유산 또는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의 집단을 포함하며 또한 특정 국가 출신의 사람과 혼인하였거나 관계를 맺고 있는 개인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성별 (성): 실질적 또는 직관적으로 느껴지는 성별 (성), 임신 또는 임신과 출산과 관련된 상태. 성별에 따른 차별 금지에는 성 희롱이 포함된다.

"성별"이라는 개념은 또한 성 정체성, 자기 이미지, 외향, 행동 또는 표현이 개인이 태어날 때 규정된 법적인 성별에 따른 전통성에 부합하는 지 여부에 관계 없이 한 사람의 성 정체성, 자기 이미지, 외향, 행동 또는 표현을 포함한다.

인종/피부색: 실제의 또는 외견상 인식되는 인종이나 피부색.

종교/신념: 실질적 또는 직관적으로 느껴지는 종교 또는 신념 (종교로서의 요건에 부합하는 지 여부에 관련 없는 기본적인 믿음).

성적 취향: 실질적 또는 직관적으로 느껴지는 성적 취향. 성적 취향은 이성애, 동성애 또는 양성애를 의미한다.

체중: 실질적 또는 직관적으로 느껴지는 몸무게.

학생 대 학생의 괴롭힘, 협박 및/또는 집단 따돌림 신고서

학생 성명: _____

날짜: _____

학교: _____

OORS 번호: _____

괴롭힘, 협박 및/또는 왕따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성명:

사건이 발생한 날짜(들), 시간(들) 및 장소: _____

가능한 명확하고 상세하게 사건에 관해 서술하십시오.

귀하가 신고하는 행위가 차별에 근거한 것이라 생각한다면 아래 해당하는 모든 항목에 체크하십시오.

피부색

인종

신념

종교

장애

보복 (신고에 관한)

인종/출신 국가

성취향

시민권/체류신분

성별/성

성 정체성/성별 표현

체중

현장에 있던 목격자나 이 사건에 관해 알고 있는 사람의 이름을 모두 적으십시오.

학생 서명

날짜

접수:

성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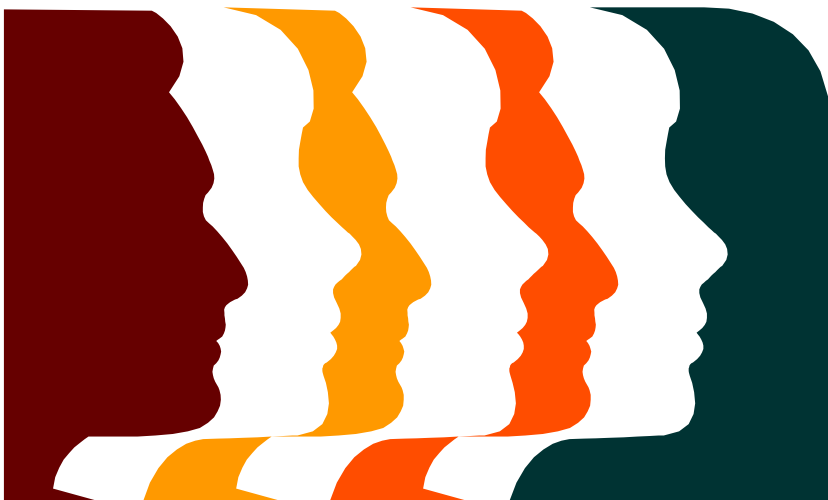
날짜

직위

NYC PUBLIC SCHOOLS

RESPECT FOR ALL

뉴욕시 훈육규정에서는 괴롭힘, 협박, 차별, 따돌림 행위를 금지합니다.



다른 학생이나 교직원에게 의해 괴롭힘, 차별, 협박, 따돌림의 피해자가 되었다고 생각하는 학생, 그리고 이러한 행위를 목격하였거나 알고 있는 모든 학생은 즉시 교직원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방법

누군가에게 차별, 괴롭힘, 협박, 따돌림을 당했거나, 이러한 행위 때문에 염려되는 점이 있어 도움이 필요하다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가십시오:

뉴욕시 교육청은 괴롭힘이나 협박, 따돌림이 없으며, 실질적이거나 인지되는 인종, 피부색, 민족, 출신국가, 시민권/체류신분, 종교, 신념, 성별, 성적체성, 성표현, 성취향, 장애 또는 체중에 따른 차별이 없는 안전하고 지원적인 교육환경을 유지하는 정책을 취하고 있습니다. 저희 정책은 학생 대 학생, 또는 교직원 대 학생간의 이와 같은 행위를 철저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금지 행위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포함되나 반드시 이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체 폭력, 타인에게 위협이 되는 신체적, 언어적 행위, 골탕먹이기, 비웃기, 고립이나 모욕을 줄 목적으로 또래 집단에서 제외시키는 행위, 괴롭히거나 모욕을 줄 목적으로 비하하거나 차별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행위 등. 이러한 정책은 교육감 규정 및 뉴욕시 표준 중재 및 훈육조치(훈육규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괴롭힘, 차별, 따돌림, 협박 등의 행위를 목격한 교직원은 즉시 이러한 행위를 중단시키기 위한 중재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훈육규정을 위반한 학생은 훈육규정 및 교육감 규정 A-443에 의거하여 해당되는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교육감 규정

교육감 규정 A-832

학생 대 학생 차별, 괴롭힘, 협박 및/또는 집단 따돌림, 직원 대 학생 차별, 괴롭힘, 협박 및/또는 집단 따돌림에 대해서는, 다음의 규정서 참고

교육감 규정 A-830

불법적인 차별/괴롭힘에 대한 내부적인 이의제기 접수

교육감 규정 A-420

학생 품행 및 징계-체벌

교육감 규정 A-421

언어적 학대

보고 한 후에 어떻게 진행됩니다?

집단 따돌림, 괴롭힘, 차별 또는 협박에 대한 모든 보고는 조사를 하게 됩니다.

교육감 규정 A-443 에 따라, 만약 학생이 규율 규정을 위반하는 행동을 한다면, 적절한 징계 조치가 취해질 것입니다.

만약 부적절한 품행이 위법적인 행위라면, 경찰에게 연락하게 될 것입니다.

학생 지원

적절하다면, 개별 또는 단체 상담, 외부 기관으로의 추천 및/또는 다른 중재 조치가 제공될 것입니다.



마이클 R. 블룸버그
시장

데니스 M. 월콧
교육감

괴롭힘이나 차별을 보고한 사람 또는 조사에 협조한 사람에 대한 보복은 금지됩니다. 이런 문제로 보복을 당했다고 생각하는 학생은 즉시 학교 관리자에게 연락하십시오.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다음 이메일 주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RespectForAll@schools.nyc.gov

비밀 보장: 모든 관계자들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하는 것이 뉴욕시 공립학교의 정책이며 이 정책에 따라 이의 제기를 처리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가끔은 이의 제기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정보를 나누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의 제기에 대한 정보는 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사항을 알아야 할 개인에게 공개될 수도 있습니다.

뉴욕시 교육청

모든 사람
존중하기:

뉴욕시 공립학교를
안전한 곳, 모든 학생을
지원하는 곳으로
만들어 갑시다



뉴욕시 공립학교의 모든 사람 존중하기

뉴욕시 공립학교의 모든 학생, 교사, 직원들은 뉴욕시의 자랑인 문화적 다양성과 타인을 존중하는 마음을 학교 사회에 심어주는 주역들입니다.

교육청은 괴롭힘, 협박 및/또는 집단 따돌림 및 실질적 또는 추정적 인종, 피부색, 시민권/이민 상태, 종교, 신념, 출신 국가, 장애, 민족, 성별, 성 정체성, 성적 표현, 성적 지향 또는 몸무게에 따른 차별이 없는 안전하고 지원적 학습 환경을 유지하는 정책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존중: 타인의 가치나 우수성에 대한 평가 또는 판단; 적절한 수용이나 우대; 다른 사람의 존엄성을 고려; 인지; 존중 또는 존경 받는 상태; 타인을 고려하거나 배려를 보이는 것

이 정책은 학생들이 다른 학생 및 직원이 학생들에게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차별, 괴롭힘, 협박 및/또는 집단 따돌림은 학교, 학교 운영 시간, 방과 전 또는 후, 교내, 학교 지원 이벤트 또는 교육청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차량으로 이동하는 중 금지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런 행동이 교육 진행을 방해하거나 방해할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거나 학교 커뮤니티의 건강, 안전, 도덕성 또는 안녕에 위험을 초래하거나 위험을 초래할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을 때 학교 외의 장소에서도 금지될 것입니다.

교육감 규정서 및 규율 규정의 사본은 학교장실 및 온라인 <http://schools.nyc.gov/default.aspx>에서 찾아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차별이나 괴롭힘으로 간주되는 행동엔 무엇이 있을까요?

차별에 기반한 괴롭힘, 협박 및/또는 집단 따돌림은 다양한 형태를 띠 수 있으며 육체, 언어, 글쓰기 등으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육체적 괴롭힘은 신체적 상처 또는 상처를 입히겠다는 협박이 포함됩니다. 사회적 괴롭힘은 친구사이의 거절 또는 배제에서 개인이 수치심을 느끼게 하거나 고립되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언어적 괴롭힘은 욕을 하며 놀리기, 비웃기 또는 모욕하기 등을 의미합니다. 서면으로 차별, 괴롭힘, 협박 및/또는 집단 따돌리기에는 다음을 포함하지만 여기에 국한되지 않는 정보 테크놀로지를 이용한 전자 커뮤니케이션 (인터넷-왕 따)이 포함됩니다: 인터넷, 핸드폰, 이메일, 개별 디지털 지원기기, 소셜 미디어, 블로그, 대화 방 및 게임 시스템.

다음과 같은 예가 포함됩니다:

- 신체적 폭력, 스토킹;
-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겠다는 언어적 또는 신체적 협박;
- 어떤 행동을 하도록 학생 또는 직원에게 강요 또는 조정하고자 함; 신고식;
- 비웃기; 굴욕을 느끼거나 소외를 목적으로 또래 그룹에서 제외시키는 행동;
- 모욕적인 언어를 사용하거나 모욕적인 농담 또는 모욕적이거나 괴롭게 욕하기;
- 모욕적인 말하거나 학생의 인종, 피부색, 민족, 종교, 신념, 출신 국가, 성별, 성 정체성, 성적 표현, 성적 지향, 시민권/이민 상태, 몸무게 또는 장애에 따른 호전적인 행동;
- 게시, 돌려보거나 또는 서면 또는 인쇄된 의상이나 인터넷에 게시된 (인터넷 왕 따) 타인에 대한 모욕적인 의견이나 스테레오타입을 포함한 낙서와 같은 서면 또는 그래픽 자료; 개인의 인종, 피부색, 민족, 종교, 신념, 출신 국가, 성별, 성 정체성, 성적 표현, 성적 지향, 시민권/이민 상태, 몸무게 또는 장애에 기반한 이런 행동을 취한 경우.

만약 본인이 다른 학생 또는 직원으로부터 괴롭힘, 집단 따돌림 또는 차별을 받았다고 믿거나 또는 이런 행동을 목격하였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른 학생 또는 직원으로부터 괴롭힘, 집단 괴롭힘 또는 차별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학생들 및 이런 행동에 대해 인지한 모든 학생들은 이런 행동을 즉시 보고하여야 합니다.

- 다른 학생으로부터 집단 따돌림, 협박, 차별 또는 괴롭힘을 받은 학생은 서면 또는 구두로 학교의 모든 타인 존중 (Respect for All) 포스터에 기재된 학교 교직원이나 기타 모든 학교 직원들에게 보고할 수 있습니다.
- 학생은 교직원 대 학생 괴롭힘, 협박 및/또는 집단 따돌림에 대해 학교장/담당자 또는 특별 조사 담당실(Office of Special Investigation)에 보고할 수 있습니다.
- 학생은 인종, 피부색, 민족, 종교, 신념, 출신 국가, 성별, 성 정체성, 성적 표현, 성적 지향, 시민권/이민 상태, 몸무게 또는 장애에 기반한 교직원의 학생 차별을 학교장/담당자 또는 평등한 기회 담당실(Office of Equal Opportunity)에 보고할 수 있습니다.
- 이런 행위가 효율적으로 조사 및 다루어질 수 있도록 사건이 발생 한 후 가능한 빨리 보고하여야 합니다.
- 직원은 반드시 이런 행위가 중단될 수 있도록 적절한 중재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학생 대 학생의 괴롭힘 또는 차별에 대한 이의 제기를 위해 학교 여러 곳에 게시된 모든 사람 존중하기 포스터에서 담당 직원의 이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